

캘리포니아 주 공지

민사소송법 제 1179.04(c)

캘리포니아 의회는 COVID-19 세입자 구제법을 연장했습니다. 해당 법률은 COVID-19와 관련 재정난을 경험한 세입자가 2020년 3월 1일에서 2021년 9월 30일까지 임대료 미납으로 인하여 퇴거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.

“COVID-19 관련 재정난”은 아래와 같습니다.

1. COVID-19 대유행으로 인한 소득 감소.
2. COVID-19 대유행 중 필수 업무 수행 관련 직접 지출 비용의 증가.
3. COVID-19 대유행에 직접 관련된 건강 지출비용 증가.
4. COVID-19 대유행으로 발생한 어린이, 노인, 장애인, 혹은 아픈 가족에 대한 돌봄으로 인한 근로 소득의 제한.
5. COVID-19 대유행에 직접 관련된 어린이나 노인, 장애인, 환자 가족 돌봄 비용 증가.
6. 기타 COVID-19 대유행으로 인한 수입 감소 혹은 지출 비용 증가.

본 법안은 아래와 같은 보호 조치를 제공합니다.

1. 상기 내용과 같이 COVID-19 대유행으로 인한 수입 감소 및 지출 증가로 인하여 2020년 3월 1일에서 2020년 8월 31일 사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, 본 미지급 건으로 인한 퇴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
2. 상기 내용과 같이 COVID-19 대유행으로 인한 수입 감소 및 지출 증가로 인하여 2020년 9월 1일에서 2021년 9월 30일 사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, 2021년 9월 30일 이전에 해당 기간 미지급된 임대료의 25%를 지불하면 퇴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

귀하는 임대인에게 COVID-19 관련 재정난으로 인하여 수입이 감소하였거나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위증 시 처벌이 발생할 것을 확인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상기 기술된 COVID-19 퇴거 제한 보호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임대인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 발생한 귀하의 임대료 미지급으로 퇴거 조치를 진행하기 전에, 임대인은 귀하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안내 및 본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서 양식을 15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.

귀하의 임대인이 2020년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부서에서 발표한 바에 의거하여 귀하의 가구수입이 임대물이 위치한 주 중위 소득의 130% 이상이라는 소득 증빙을 가지고 있다면, 귀하의 임대인은 귀하에게 COVID-19 대유행으로 인하여 귀하의 소득이 감소하였거나 지출 비용이 증가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귀하의 임대인은 반드시 15일 전에 본 서류의 필요 여부를 공지해야 합니다. 고용주가 발송한 알림, 실업 보험 기록, 의료 영수증 등의 재정적 영향을 입증하는 모든 서류를 문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
임대인의 15일 전 통지 및 계약 이행 통지, 혹은 퇴거 명령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15일 전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안에 임대인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셨을 경우, 퇴거 조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 발생한 임대료 미납액 중 최소 25% 이상을 납부하지 않았을 시 2021년 10월 1일 퇴거 조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

임대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본 퇴거 조치 연장 이외에도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 및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COVID-19 대유행으로 인한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급이 불가능한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임대 지원 절차를 만들었습니다. 본 절차는 귀하가 납부기한이 지난 임대료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. 추가로 본 프로그램은 자금 가용성에 따라 추후 임대료 납부 또한 지원할 수 있습니다.

모든 임차인이 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, 시민권이나 이민자 신분과 무관하게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본 지원 수령이나 신청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
지원 자격 충족 방법을 포함한 COVID-19 임차인 구제법 및 주 혹은 지역의 신규 임대 지원 절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, [Housingiskey.com](https://www.housingiskey.com) 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, 1-833-430-2122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”